

하여 수수료 금액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수수를 5,000원으로, 자격증 재교부 수수료를 2,000원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지난 11월 10일과 11일 양일간 保健社會委員會 제4차, 5차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치면서 다각도로 심도 있게 토의한 결과, 우리 위원회 만장일치로 本 條例案과 改正條例案을 각각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本 委員會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議員님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文一權 내,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保健社會委員會에서 심사보고한 서울特別市女性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과 서울特別市看護助務士資格試驗應試 및 資格證再交付手數料徵收條例案, 이상 2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議員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이상 2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事棒 3打)

(參 照)

서울특별시여성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여성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시정개발담당관 여성정책계장”을 “여성정책 담당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간호조무사자격시험응시및자격증재교부수수료징수조례안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관한규칙 제6조제3항 및 제11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에에서 시행하는 간

호조무사자격시험에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와 간호조무사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의 금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종류 및 금액)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은 다음과 같다.

수수료 종류	단위	수수료 금액
간호조무사자격시험 응시원서 제출	1건	5,000원
간호조무사 자격증 재교부 신청	1건	2,000원

제 3 조(수수료의 납부) 수수료는 서울특별시 수입증지로 납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9. 서울特別市建築條例中改正條例案(都市整備委員會 委員長 提出)

(15時 56分)

○議長 文一權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서울特別市建築條例中改正條例案을 상정합니다.

(議事棒 3打)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 안건의 심사보고는 이미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로 같음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參 照)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 제2선거구 출신 도시정비위원회 이강욱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문일권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이번 제99회 임시회 제4차 도시정비위원회에서 본의원 외 1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회 발의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동기는 현행 서울특별시건축조례중 관련규정이 불명확하여 해석상의 논란으로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거나 형평성의 결여에 따른 민원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합리적으로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하여 건축조례개정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p>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정한 건축조례 제18조제2항에는 판매시설·위락시설 및 관람집회 시설인 건축물의 대지는 도로에 6m이상 접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그 도로의 너비이상 접하도록 하고, 대지가 접하여야 하는 도로의 너비와 완화할 수 있는 도로 너비의 범위를 세분화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p> <p>둘째, 너비 12m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구청장이 주민공람후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환경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인 경우 일반주거지역안에서도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를 건축할 수 있도록 하며,</p> <p>셋째, 도시설계지구, 도심계개발구역, 상세계획구역안의 건축물과 주거복합건축물의 용적률이 중심상업지역안에서는 1,000퍼센트이하, 일반상업지역안에서는 1,000퍼센트이하, 근린상업지역안에서는 900퍼센트이하, 주준거지역 안에서는 70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된 것을 “이하로 한다”라고 개정하여 용적률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고,</p> <p>넷째,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외벽 각 부분까지 떨어져 할 대상 건축물의 거준선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으며,</p> <p>다섯째, 건축기준의 완화에 있어서 공개공지를 설치할 경우 제53조의 규정을 추가하여 형성성을 제고토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p> <p>기타 법률생활의 안정을 위해 이 조례시행</p>	<p>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p> <p>등 조례안은 본의원 외 1인이 서면동의로 발의하여 '97.11.12. 개최된 제99회 임시회 제4차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출석위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p> <p>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울특별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p> <p>감사합니다.</p> <p>.....</p> <p>○議長 文一權 그러면 都市整備委員會에서 제안설명한 서울特別市建築條例中改正條例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p> <p>議員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事棒 3打)</p> <p>.....</p> <p>(參 照)</p> <p>서울특별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중 “6미터 이상”을 “그 도로의 너비 이상”으로 하고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th> <th colspan="2">대지가 접하여야 하는 도로의 너비</th> <th colspan="2">완화할 수 있는 도로 너비의 범위</th> </tr> <tr> <th>도로가 1개인 경우 도로너비</th> <th>2개 이상의 도로인 경우 6미터 이상인 2개도로 너비의 합</th> <th>도로가 1개인 경우 도로 너비</th> <th>2개 이상의 도로인 경우 6미터 이상인 2개도로 너비의 합</th> </tr> </thead> <tbody> <tr> <td>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td> <td>8미터 이상</td> <td>12미터 이상</td> <td>6미터 이상</td> <td></td> </tr> <tr> <td>2천제곱미터 이상 3천제곱미터 미만</td> <td>10미터 미만</td> <td>14미터 이상</td> <td>8미터 이상</td> <td>12미터 이상</td> </tr> <tr> <td>3천제곱미터 이상</td> <td>12미터 이상</td> <td>16미터 이상</td> <td>10미터 이상</td> <td>14미터 이상</td> </tr> </tbody> </table>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	대지가 접하여야 하는 도로의 너비		완화할 수 있는 도로 너비의 범위		도로가 1개인 경우 도로너비	2개 이상의 도로인 경우 6미터 이상인 2개도로 너비의 합	도로가 1개인 경우 도로 너비	2개 이상의 도로인 경우 6미터 이상인 2개도로 너비의 합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	8미터 이상	12미터 이상	6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이상 3천제곱미터 미만	10미터 미만	14미터 이상	8미터 이상	12미터 이상	3천제곱미터 이상	12미터 이상	16미터 이상	10미터 이상	14미터 이상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	대지가 접하여야 하는 도로의 너비		완화할 수 있는 도로 너비의 범위																									
	도로가 1개인 경우 도로너비	2개 이상의 도로인 경우 6미터 이상인 2개도로 너비의 합	도로가 1개인 경우 도로 너비	2개 이상의 도로인 경우 6미터 이상인 2개도로 너비의 합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	8미터 이상	12미터 이상	6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이상 3천제곱미터 미만	10미터 미만	14미터 이상	8미터 이상	12미터 이상																								
3천제곱미터 이상	12미터 이상	16미터 이상	10미터 이상	14미터 이상																								
<p>제21조제12호중 “구위원회”를 “구도시계획위원회”로 하고, “지정·공고한 구역안의”를 “지정·공고한 구역안의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p>		<p>한·차고와”로 한다. 제53조제2항중 “70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를 “700퍼센트 이하로 한다.”로 한다.</p>																										